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5365453 판결 [물품보증금 반환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현성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42,16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2022.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542,16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류 도소매 및 판매업, 의류 수출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에서 의류판매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21.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 잠실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무준수)

다.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체결 시 해당 매장에 대한 물품보증금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당일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가. 피고는 본 계약 종료 시 제4조 다.항의 물품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다. 피고는 해당 매장에 입정이 어렵거나 유보 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한다.

라. 계약 종료 시 피고와 원고는 재고를 파락한다. 피고는 재고의 손실, 분실 등에 대하여 차감 후 물품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3) 원고는 2021. 7. 30.부터 2021. 8. 6.까지 물품보증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매장 입점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21. 10. 2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고 한다).

1.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해지합의 이후 재고 실사에 착수하여 재고의 손실, 분실 등에 따

른 금액을 2021. 10. 30.까지 산정하기로 하며, 재고의 손실, 분실 등에 따른 피고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그 손해액을 물품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해지합의 이후 매장 내 집기 및 인테리어 훼손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여 그 손해액을 2021. 11. 15.까지 산정하기로 하며,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물품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4. 피고는 2021. 11. 30.까지 원고에게 본 합의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5. 피고는 2021. 12. 30.까지 원고에게 본 합의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4) 피고는 2022. 2. 9.부터 2022. 5. 2.까지 원고에게 총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5) 한편, 이 사건 해지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보증금 중 미지급금액과 지연손해금을 2022. 6. 29.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이율	지연이자	기간			비고
				시작	종료	일수	
보증금	50,000,000	6%	246,570	2021-12-01	2021-12-30	30	2021.11.30 보증금 50% 지급 약정(해지합의서)
	100,000,000	6%	657,530	2021-12-31	2022-02-08	40	2021.12.30 보증금 50% 지급 약정(해지합의서)
	90,000,000	6%	207,120	2022-02-09	2022-02-22	14	2022.02.09 10,000,000원 수령
	80,000,000	6%	486,570	2022-02-23	2022-03-31	37	2022.02.23. 10,000,000원 수령
	75,000,000	6%	86,300	2022-04-01	2022-04-07	7	2022.04.01 5,000,000원 수령
	70,000,000	6%	276,160	2022-04-08	2022-05-01	24	2022.04.08 5,000,000원 수령
	60,000,000	6%	581,910	2022-05-02	2022-06-29	59	2022.05.02 10,000,000원 수령
합계			2,542,1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합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

금액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산일인 2022. 6. 29. 기준 미지급 물품보증금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542,160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22.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된다고 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000만 원을 불법으로 추심하였거나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이중으로 가압류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원인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근